

『2026년 경남진주강소특구 이노테크 기업육성 사업』 테크코어/테크스타트, 테크플래그십 시행 공고

경남진주강소연구개발특구에서는 지역 기업의 성장 지원을 통한 지역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2026년 경남진주강소특구 이노테크 기업육성 사업』 테크코어/테크스타트(추가모집) 및 테크플래그십 시행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관심있는 기업 및 관계자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년 6월 12일
경남진주강소특구지원센터장

1 사업개요

- 사업명: 『2026년 경남진주강소특구 이노테크 기업육성 사업』
- 사업목적: 특화(친환경 미래비행체 부품·소재) 및 연계 분야 기업에 대한 수요 맞춤형 기술사업화 지원으로 기업 경쟁력 강화 및 매출 증대 촉진
- 사업내용: 진주시 소재 기업의 수요에 기반한 원스톱 기술사업화(기술고도화, 시작(제)품 제작, 시험분석, 연구개발 등)
- 사업구성

- ① 테크코어/테크스타트 추가 시행 10 Page 참조
- ② 테크플래그십(조인트테크업) 시행 13 Page 참조
- ③ 테크플래그십(테크스케일업) 시행 14 Page 참조

- 사업예산: 총 313백만원
- 사업기간: **협약일로부터 ~ 2026년 12월 31일**
- 지원방식: **바우처 방식*** (사업비가 선정기업에 직접 교부되지 않음)
 - ① 테크코어/테크스타트업: 선정기업의 사업비 사용과 관련하여 기술핵심기관이 재료구매 및 시제품 제작 등을 제공(납품)하는 기업/기관 등으로 직접 지급
 - ②③ 테크플래그십: 기업이 원하는 내용을 지원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이 수행
 - 조인트테크업 분야: 한국산업기술시험원 / 테크스케일업 분야: 한국세라믹기술원

□ 지원대상

공통 지원 조건 (3가지 중 1가지 이상 해당하는 기업)	
①	경남진주강소특구 내 특화 분야(친환경 미래비행체 부품·소재) 기업
②	진주시 소재 기업 중 특화 분야 및 연계 분야 기업(기계, 조선, 자동차, IT, RT, BT, NT 등)
③	진주 관외 기업의 경우 지원기간 내 강소특구 내 사업장 이전(설립) 필수
※ 경남진주강소특구 특화 분야관련 과제 우선 지원 예정	

□ 사업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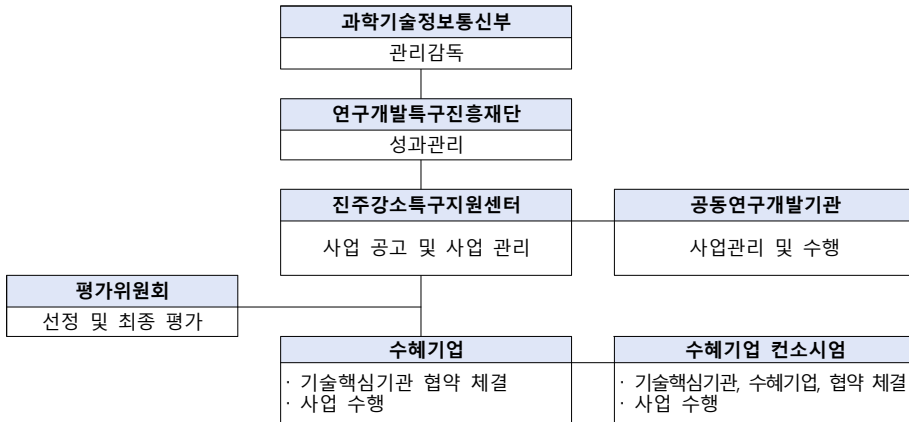
분야	주요내용	지원규모	
		분야별 금액	총액
I 테크코어	· 경남진주강소특구 내 공공연구기관 보유기술의 사업화 를 추진하는 특구 내 기업, 연구소기업 또는 연구소기업 설립 및 출자를 추진 중인 기업 지원 · 대상기업의 매출신장을 위한 기개발·휴먼 기술의 사업화 를 위한 지원 · 연구소기업 설립 후 연구소기업이 보유한 기술개발 및 고도화를 위한 후속 지원	50백만원 (1개사 내외)	50 백만원
II 테크스타트	· 핵심기술 확보를 희망하는 초기기업 의 연구개발 역량 강화 및 사업화 모델 탐색을 지원하여 기업 성장기반을 조기 확보하도록 지원 · 보유 및 이전 기술의 시연에 필요한 시제품 제작을 지원하고 사업화, TRL 제고 등 성장잠재력 확보에 필요한 전문가 컨설팅 지원	25백만원 (3개사 내외)	75 백만원
III 테크 플래그십	· 안티드론 분야 하드웨어(넷건 등) 기술개발 · 시스템 구성 요소 기술개발, 시제품제작 및 성능 검증	40백만원 (1개사)	88 백만원
	· 안티드론 분야 기능성 구조·소재(넷건 등) 기술개발 · 구조 안정성 및 기능 구현, 시제품 제작 및 성능 검증	45백만원 (1개사)	
	· 항공우주 분야 기술 컨설팅 · (시험평가) 시험계획 수립 및 시험평가 지원 · (기술지도) 애로기술 전문가 기술 컨설팅	1.5백만원 (2개사)	
	· 특화 산업 분야에 적용 가능한 소재·부품 기술을 활용하여, 기업 보유 제품의 성능 개선, 기술고도화 및 시제품 제작	50백만원 (2개사)	

※ 신청기업은 지원분야별 중복지원 불가

- 민간부담금: 해당 없음
- 결과물에 대한 소유권: 신청기업에 귀속
 -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름
- 기술료 징수: 해당 없음
 - ※ 단, 지식재산권,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성과는 신청기업과 공동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다.(과학기술기초법 부칙<법률 제9992호, 2010. 2. 4.>(기술료 징수에 관한 적용례) 및 국가연구혁신법 제18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2 추진체계 및 추진절차

□ 추진체계



□ 추진절차

절 차	일 정	주요내용
사업공고	6월 12일 ~ 6월 22일	· 모집 공고
↓		
사업신청 접수	6월 12일 ~ 6월 22일	· 연구개발계획서 및 관련서류 접수, 사전검토
↓		
평가 및 선정	6월 25일	· 평가위원회 개최, 지원 대상 확정, 수혜기업 개별 통보
↓		
협약체결	평가 후 별도 안내	· 연구개발계획서 보완 및 협약체결
↓		
사업수행	협약기간	· 사업수행
↓		
중간 점검	9월 중	· 사업 추진현황 중간 점검
↓		
사업수행 결과보고	협약기간 종료 후	· 결과보고 / 최종평가 / 연구개발비 정산

※ 추진일정 및 내용 등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지원제외대상 및 관련 법령

□ 지원제외 대상

- 2026년 강소특구 기술이전사업화 R&BD사업, 2026년 강소특구 이노테크 기업육성 사업에 선정된 기업은 지원제외 됨(중복수혜 불가)
- 신청자격 검토사항 및 사전지원제외 대상: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의 제19조에서 제한하는 대상은 지원제외 대상으로 함

검토사항	내용
참여제한 해당 여부	· 신청기업, 신청기업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총괄(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함
공고내용과의 부합성	· 신청 과제가 해당 사업의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함
기 개발 또는 기 지원 연구개발과제와의 차별성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과제와 비교하여 판단요소가 동일하거나 거의 유사한 경우에는 중복과제로 판단하여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다만, 일부 중복의 경우 해당 사항의 삭제 또는 변경을 조건으로 지원대상과제로 할 수 있음 · 전문기관의 장은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를 통해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과제와의 차별성 검토를 실시하며, 유사성이 의심되는 경우 과제의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회에서 그 차별성 여부를 판단함 · 이미 지원되었던 과제라 하더라도 "중단(성실, 불성실)"이나 "불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과제는 중복대상으로 보지 않음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신청기업, 공동연구개발기관, 총괄(과제)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회수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전문기관의 장은 신청기업, 신청기업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총괄(과제)책임자 등을 아래의 사전지원제외 대상 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적용하지 아니함(다음 각 호의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최근 2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

검토사항	내용
	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 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 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 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또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제9의7호의 산업위aggi지역 소재 기업은 예외로 한다.)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대출형 투자유치(CB, BW 등)를 통한 신규차입금 및 상환전환 우선주(RCPS)는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상기 부채비율 계산 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여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판단 가능.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가에 제출해야 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 상기의 신용등급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6.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자본전액잠식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 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여 자본전액잠식 여부 판단 가능.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가에 제출해야 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7.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절"

□ 관련법령 및 규정

근거법령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 및 관련 행정규칙*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기준,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등 ○ 과학기술기본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시행규칙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국가연구개발 시설 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관련규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 ○ 경남진주강소특구 특화개발사업 관리지침 소급 적용

※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본 공고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상기 근거를 적용함

4 평가절차

□ 평가일정 및 절차

- (평가일정) 2026년 6월 25일 (예정)
 - (평가절차)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위원회를 통한 발표평가(10~15분) 진행
- 테크플래그십(조인트테크업 - 컨설팅분야 서면평가 진행)

□ 평가항목(선정)

구분	평가항목	비중(%)
추진계획 타당성	• 사전준비도 및 사업목표의 명확성	30
	• 사업추진 방안의 타당성	
지원 필요성 및 추진역량	• 지원의 필요성 및 적합성	40
	• 사업추진 역량 및 의지	
지원 효과성 및 사업비 적정성	• 사업지원의 기대효과	30
	• 사업비 구성의 적정성 및 합리성	
합 계		100

※ 평가항목 및 비중 등은 평가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동일점수기준: 선정평가 점수가 동일 시 1순위 특화분야 기업 2순위 경남진주강소특구 소재 기업

□ 평가방법

- 신규과제 선정평가는 평가 계획에 의거하여 서면평가, 발표평가로 진행함
- 연구개발계획서의 발표는 연구책임자가 하는 것이 원칙임
- * 부득이 한 경우 사전협의에 의해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함
- 신청과제의 평가를 통해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 종합평점이 **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 '지원 가능 과제'로 분류된 경우라도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최우선 순위 과제가 협약 전 선정제외 또는 협약체결을 포기하였을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과제' 중 차순위 과제가 순차적으로 지원대상과제로 선정될 수 있음
- 선정된 과제의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사업선정 시 주요 성과지표, 세부예산 및 연구개발계획 관련 세부내용 등은 기술 핵심기관(경상국립대학교)과 협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
- 평가의 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5 신청방법 및 문의처

□ 연구개발계획서 및 관련 양식 교부

○ 사업공고: 경남진주강소특구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innopolisjinju.com>)

진주시 홈페이지(<https://www.jinju.go.kr>)

경상국립대학교 홈페이지(<https://www.gnu.ac.kr>)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홈페이지(<https://www.ktl.re.kr/>)

한국세라믹기술원 홈페이지(<https://www.kicet.re.kr/>)

○ 접수방법: 원본을 스캔하여 전자파일(PDF) 형태로 E-mail 제출(선정기업에 한하여 원본 제출)

연번	제출서류	서식	비 고
필수	1 사업신청 공문	-	신청기업 자사 양식
	2 연구개발계획서	서식 1호	지원분야에 따라 양식 상이
	3 사업자등록증(원본대조필)	-	
	4 법인등기부등본(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	-	법인인 경우
	5 최근 3개년도('23~'25년) 재무제표(원본대조필) 또는 회계감사보고서(원본대조필)*	-	
	6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	
	7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중견기업확인서**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발급분)	-	협약시 제출 가능
	8 의무이행서약서 - [첨부] NTIS 과제 차별성 검토결과지	서식 2호	
	9 평가 동의서	서식 3호	
	10 개인정보 및 과제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서식 4호	
	11 발표자료	-	조인트테크업 컨설팅분야 제외
해당기업	12 사업장 이전/설립 협약서	서식 5호	진주 외 신청기업 제출
	13 연구소기업 등록증	-	연구소기업인 경우 제출
	14 [사업화 촉진 분야]기술이전 계약서	-	
	15 [사업화 촉진 분야]기술이전 협약서	서식 6호	2026년 신규 이전 예정 기업

* 창업 3년 이내 기업은 해당연도 자료만 제출(당해연도 창업기업의 경우 제출 예외)

** 확인서 발급사이트: 중소기업확인서(<http://sminfo.mss.go.kr>), 중견기업확인서(<https://mme.or.kr>)

※ 주의사항: 중견기업 확인서는 신청일로부터 20일 이상 소요될 수 있으며, 제출서류 내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 후 제출

※ 최종 선정 시 신청서류(원본)과 부가가치세표준증명원(2025년), 4대보험가입자명부(2025년) 제출 필수

○ 접수기간: 2026. 6. 12.(금) ~ 6. 22.(월) 16:00까지 [기한엄수]

○ 접 수 처: 경남진주강소특구지원센터 특화지원팀(innopolis@gnu.ac.kr)

○ 문 의 처

구분	연락처	E-mail	주소	기관
테크코어	055-772-4846	innopolis@gnu.ac.kr	(우)52725 진주시 동진로 33 경상국립대학교 칠암캠퍼스(18동 303호)	경남진주강소 특구지원센터
테크스타트	055-772-4851			
조인트테크업	055-791-3593	ryankang@ktl.re.kr	(우)52852 진주시 충의로 10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산업 기술시험원
	055-791-3577	yh.cheong@ktl.re.kr		한국산업 기술시험원
테크스케일업	055-792-2716	ginggiscan@kicet.re.kr	(우)52851 진주시 소호로 101 연구혁신본부 항공우주방산연구단	한국세라믹 기술원

6 유의사항

가.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연구개발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대외무역법」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신청으로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자 부담으로 함

-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정 및 보완요청에 기한 내에 응하여야 하며, 응하지 않거나 제출기일 경과 시 신청 포기로 간주함
- 신청서상 연락처 기재 오류 등으로 인한 통지 불능의 책임은 신청기업에 있음
- 제출된 연구개발계획서의 내용은 선정평가를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청자의 동의 없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다.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 되거나, 참여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및 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 정부 사업 참여 제한 및 사업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라. 아래와 같은 경우 지원을 철회(해약)하고 환수조치 할 수 있음

-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기재된 내용에 관하여 확인 및 검증이 필요할 경우,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시 확인 및 검증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함
 -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 이내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 중간점검(현장점검) 결과 사업추진이 현저히 미진하거나 사업 완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개발목표 및 내용이 동일한 과제로 중앙정부·타 지자체 등 기업지원사업과 중복으로 지원을 하였을 경우(향후 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음)
 - 연구개발사용이 부적합하거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마.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 사업 지침·기준 및 안내자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지침, 기준 등을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을 신청한 기업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에게 있음
- 바. 공동연구개발기관(대학, 정부출연연 등)의 책임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기준(3책 5공)에 적용받지 않으며, 참여인력은 해당 소속기관에서 급여를 받고 4대보험 납부증빙이 가능해야 함
- 사. 선정기업은 본 사업과 관련하여 홍보 및 사업성과(사업화 성공여부, 매출액 상용화, 고용창출, 논문, 특허 등) 제고를 위한 성과보고회, 간담회, 만족도 조사, 언론보도, 홍보영상, 성과사례집 제작 등에 협조하여야 함
- 아. 과제 현황, 비용 집행 현황 등을 점검하기 위한 점검, 실사, 결과 평가, 정산 등을 진행해야 하며, 선정기업은 자료 제출 및 점검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함
- 자. 선정 기업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및 경남진주강소특구에 지원 후 5년간 사업 성과(매출, 고용, 투자)를 제출하여야 함

1

세부지원내용 : 테크코어 및 테크스타트업(추가모집)

1] 지원개요

- 사업목적: 특화(친환경 미래비행체 부품·소재) 및 연계 분야 기업에 대한 수요 맞춤형 기술사업화 지원으로 기업 경쟁력 강화 및 매출 증대 촉진
- 사업내용: 진주시 소재 기업의 수요에 기반한 원스톱 기술사업화(기술고도화, 시작(제)품 제작, 시험분석, 연구개발 등) 지원

2] 지원내용

- 사업기간: 협약일로부터 ~ 2026년 12월 31일
- 지원방식: 기술핵심기관 수행(**바우처 방식**)
- 지원대상: 특화(친환경 미래비행체 부품·소재) 및 연계 분야 기업단독 혹은 경상국립대학교 및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활용하여 사업화를 추진하는 기업

공통 지원 조건 (3가지 중 1가지 이상 해당하는 기업)

- ① 경남진주강소특구 내 특화 분야(친환경 미래비행체 부품·소재) 기업
- ② 진주시 소재 기업 중 특화 분야 및 연계 분야 기업(기계, 조선, 자동차, IT, RT, BT, NT 등)
- ③ 진주 관외 기업의 경우 지원기간 내 강소특구 내 사업장 이전(설립) 필수

※ 경남진주강소특구 특화 분야관련 과제 우선 지원 예정

○ 지원분야

분야	주요내용	지원규모	
		분야별 금액	총액
I 테크코어	사업화촉진 지원 · 경남진주강소특구 내 공공연구기관 보유기술의 사업화 를 추진하는 특구 내 기업, 연구소기업 또는 연구소기업 설립 및 출자를 추진 중인 기업 지원 · 대상기업의 매출신장을 위한 기개발·휴면 기술의 사업화 를 위한 지원 · 연구소기업 설립 후 연구소기업에 보유한 기술개발 및 고도화를 위한 후속 지원	50백만원 (1개사 내외)	50 백만원
II 테크스타트업	혁신역량 초기기업 지원 · 핵심기술 확보를 희망하는 초기기업 의 연구개발 역량 강화 및 사업화 모델 탐색을 지원하여 기업 성장기반을 조기 확보하도록 지원 · 보유 및 이전 기술의 시연에 필요한 시제품 제작을 지원하고 사업화, TRL 제고 등 성장잠재력 확보에 필요한 전문가 컨설팅 지원	25백만원 (3개사 내외)	75 백만원

○ 세부내용

I [테크코어] 사업화촉진 분야

구분	주요내용
지원내용	· 대상기업의 매출신장을 위한 시작(제)품 제작 지원, 시험·인증비용 지원, 국내외 판로개척을 위한 시장조사, 컨설팅, 마케팅 지원 · 기술검증, 시험분석평가 등 사업화 전주기 지원

지원요건	3가지 요건 중 1가지 이상 해당하는 기업 • 경남진주강소연구개발특구내 기업 • 경남진주강소연구개발특구내 기술이전 또는 기술이전 예정 기업 • 연구소기업 및 연구소기업 설립 및 출자를 추진 중인 기업
지원형태	• 기업 + 경상국립대학교 • 기업 + 공공연구기관 • 기업단독 ※ 공동연구개발: 기업, 연구기관(대학, 출연(연), 전문(연)), 산업기술연구조합 등 관련 분야 기관과 컨소시엄 구성 가능
지원규모	• 건당 50백만원 이내 예산 범위 내 지원
가점조건	• 2025년도 설립 연구소기업(2점) • 2025년도 기술이전 기업(1점) ※ 가점 적용 시 상위 점수 1개 항목 적용
필수조건	• 연구개발기간 내 신청과제 관련 지식재산권(특허권·실용신안권·상표권·디자인권 등) 출원 또는 등록 필수
기타서류	• 신규 기술이전 협약서[서식 5호] (해당 시)

II [테크스타트] 혁신역량초기기업 지원 분야

구분	주요내용
지원내용	• 사업화, TRL 제고 등 성장 잠재력 확보에 필요한 전문가 컨설팅 지원 • 기술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재료 지원 • 기술고도화 및 기술사업화를 위한 시제품 설계·제작 지원 등
지원요건	3가지 요건 중 1가지 이상 해당하는 기업 • 경남진주강소특구 내 특화 분야 기업 중 창업 7년 미만 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협약기간 시작일까지) • 진주시 내외 기업 중 특화 분야 및 연계 분야 기업 중 창업 7년 미만 기업 ※ 진주 관외 기업의 경우 지원기간 내 강소특구 내 사업장 이전(설립) 필수
지원형태	• 기업단독
지원규모	• 건당 25백만원 이내 예산 범위 내 지원
필수조건	•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술 및 경영 전문가 매칭을 통한 컨설팅 필수 수행

□ (I, II 공통사항) 사업지원 결과물 제출

- 사업 종료 시 선정 기업은 연구개발 수행 결과에 따른 다음의 결과물을 제출하여야 함
 - 최종보고서 및 관련 증빙
 - 매출증빙 (매출액 조사시 지원금액의 50%이상 기여율 반영)
 - 신규고용증빙
 - 지식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출원 또는 등록에 대한 증빙
- ※ 상기 내용은 사업 운영 상황에 따라 향후 추가되거나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세부지원분야별 지원내용(예시)

구분	세부지원분야	지원내용
연구시설·장비비	연구장비 활용	• 연구개발기간 내 연구시설의 사용료 및 연구장비 임차료 지원
연구재료 구입비	연구재료 구입	• 시약·재료 구입비 및 관련 부대 비용 지원 ※ 연구재료의 경우, 내용(사용)연수 1년 미만의 소모품에 해당
연구재료 제작비	시제(작)품 제작	• 설계 혹은 제조(공정) 품질을 확인하기 위해 시험용 혹은 실제 제조공정에서 만들어 보는 제품 제작 지원
소프트웨어 활용비	소프트웨어 활용비	• 사업화, 기술고도화 등 기술 역량 및 시제품 등에 활용하는 소프트웨어 ※ 소프트웨어활용은 연구개발기간 내 임차만 가능
외부전문기술 활용비 (연구개발비의 40% 이내 사용가능)	BM 컨설팅	• 시장환경 변화에 상응하고 보유기술·제품의 성공적 사업화 추진을 위한 최적의 비즈니스 모델 혁신, 재설계 등 컨설팅 지원
	디자인 및 마케팅	• 제품 카탈로그, 제품 매뉴얼 등의 오프라인 제작 지원
	시험/분석/인증	• 시험·분석 의뢰 및 평가, 인증 취득 등의 지원
지식재산 창출 활동비	지적재산권 확보	• 특허 출원/등록 등 지적재산권 확보를 위한 조사 비용 지원 (단, 특허 출원/등록비는 지원불가)
	시장조사	• 사업화하고자 하는 제품의 파트너·바이어·원부자재공급선 발굴 조사, 해외시장 조사, 소비자 리서치, 경쟁제품 동향조사 등의 시장조사 지원

※ 상기 예시를 참조하여 세부지원분야는 신청기업의 사업목표에 맞게 변경 가능함

③ 문의처

구분	전화번호	이메일	지원기관명
테크코어	055-772-4846	innopolis@gnu.ac.kr	경남진주강소특구지원센터
테크스타트	055-772-4851		

2 세부지원내용 : 조인트 테크업

1 지원개요

- 사업목적: 특화(친환경 미래비행체 부품·소재) 및 연계 분야 기업에 대한 수요 맞춤형 기술개발 및 컨설팅으로 기업 경쟁력 강화 및 매출 증대 촉진
- 사업내용: 진주강소특구 내 소재 기업의 수요에 기반한 기술·인증(시험)분야 기술개발 및 컨설팅 제공

2 지원내용

- 사업기간: 협약일로부터 ~ 2026년 12월 31일
- 지원방식: 공동연구개발기관 수행 (바우처 방식)
- 지원대상

공통 지원 조건 (3가지 중 1가지 이상 해당하는 기업)

- ① 경남진주강소특구 내 특화 분야(친환경 미래비행체 부품·소재) 기업
 - ② 진주시 소재 기업 중 특화 분야 및 연계 분야 기업(기계, 조선, 자동차, IT, RT, BT, NT 등)
 - ③ 진주 관외 기업의 경우 지원기간 내 강소특구 내 사업장 이전(설립) 필수
- ※ 경남진주강소특구 특화 분야관련 과제 우선 지원 예정

- 지원분야

구분	지원형태	세부내용	분야별 금액	지원 수
기술 개발	기업 단독	· 안티드론 분야 하드웨어(넷건 등) 기술개발 - 시스템 구성 요소 기술개발 - 시제품 제작 및 성능 검증	최대 40백만원	1개 사
	기업 단독	· 안티드론 분야 기능성 구조·소재(넷건 등) 기술개발 - 구조 안정성 및 기능 구현 - 시제품 제작 및 성능 검증	최대 45백만원	1개 사
컨설팅	기업 단독	· 항공우주 분야 기술 컨설팅 - (시험평가) 시험계획 수립 및 시험평가 지원 - (기술지도) 애로기술 전문가 기술 컨설팅	1.5 백만원	2개 사

3 문의처

담당자명	전화번호	이메일	지원기관명
강봉석 팀장 (한국산업기술시험원)	055-791-3593	ryankang@ktil.re.kr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정영훈 책임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055-791-3577	yh.cheong@ktil.re.kr	한국산업기술시험원

3 세부지원내용 : 테크 스케일업

1 지원개요

- 사업목적: 진주강소특구 특화분야인 친환경 미래비행체 부품·소재분야와 연계 가능한 시제품 개발을 지원하여 기업 경쟁력 강화와 사업화 성과 창출을 촉진
- 사업내용: 진주강소특구 내 소재·부품 기업의 수요를 기반으로 시제품 개발 및 제작 제공

2 지원내용

- 사업기간: 협약일로부터 ~ 2026년 12월 31일
- 지원방식: 공동연구개발기관 수행 (바우처 방식)
- 지원대상

공통 지원 조건 (3가지 중 1가지 이상 해당하는 기업)

- ① 경남진주강소특구 내 특화 분야(친환경 미래비행체 부품·소재) 기업
 - ② 진주시 소재 기업 중 특화 분야 및 연계 분야 기업(기계, 조선, 자동차, IT, RT, BT, NT 등)
 - ③ 진주 관외 기업의 경우 지원기간 내 강소특구 내 사업장 이전(설립) 필수
- ※ 경남진주강소특구 특화 분야관련 과제 우선 지원 예정

- 지원분야

지원형태	세부내용	분야별 금액	지원 수
기업 단독	· 특화 산업 분야에 적용 가능한 소재·부품 기술을 활용하여, 기업 보유 제품의 성능 개선, 기술고도화 및 시제품 제작	최대 50백만원	2개 사

3 문의처

담당자명	전화번호	이메일	지원기관명
김만태 수석 (연구혁신본부 항공우주방산연구단)	055-792-2716	ginggiscan@kicet.re.kr	한국세라믹기술원